

[별지 제4호서식]

2019년 6월 20일 제1회

## 단규심의위원회 회의록

창원경륜공단

[별지 제4-1호서식]

2019년 6월 20일 제1회

단규심의위원회 일시·출석·심의 내용

○ 일 시 : 2019년 6월 20일(목요일)

    자 : 15시 00분

    지 : 16시 00분

○ 장 소 : 창원경륜공단 회의실

○ 총위원수 : 7인

○ 출석위원수 : 7인

○ 위원장 : 김종길

위원장의 2019년도 제1회 단규심의위원회 개최선언에 이어 상임이사(관계직원)의  
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(별첨)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.

2019년 6월 20일 16시

창 원 경 림 공 단

[별지제4-3호 서식]

## 의 안 목 록 표

의 안 번 호	제1호	제 안 부 서	총무회계팀
건 명 :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			
의결내용 : 원안가결			
○ 직제규정시행내규 제7조 중 “직급별”을 “직위 미부여자”로, “대리는 6급이하(연봉계약직 포함)”을 “과장은 6 ~ 7급, 대리는 8급이하(연봉계약직 포함)”으로 일부 개정			

의 안 번 호	제2호	제 안 부 서	총무회계팀
건 명 :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			
의결내용 : 원안가결			
○ 제83조제2항 “위원 7인 이내”를 “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”으로 일부 개정			
○ 제84조 제목 및 제1항 전부개정, 제2항 일부개정, 제3항 및 제4항 신설			
• 제84조(위원위촉) ⇒ 제84조(구성 및 위원위촉)			
• 제84조제1항을 “이사장은 제83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 및 외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”로 전부개정			
• 제84조제2항 마지막 “한다.”를 “하고, 여성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일부개정			
•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			
(3)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은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			

의안번호	제2호	제안부서	총무회계팀
<p>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, 참석한 사람은 퇴직 또는 임기만료 이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85조제6항 “실비를”을 “10만원의 참석수당을”로 일부개정</li> <li>○ 제91조제4항 전부개정</li> </ul> <p>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으로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·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		